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무기성 오니를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대상 기준 신설〉

■ 안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867호)

2026. 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무기성 오니를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대상 기준 신설	3

I. 제안경위

2026년 3월 30일 안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6년 3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폐기물을 순환이용 하는 등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을 토양·지하수·지표수와 직접 접촉하는 매립형 재활용 등을 하려는 자는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여 재활용을 허용하는 재활용 환경성평가를 도입·시행 중에 있음.

당초 도입 목적은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종 폐기물 등 관련업종의 하위법령 개정요구가 빈번함에 따라 과도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자원순환의 활성화 근거를 법에 직접 마련하기 위함이나, 재활용환경성평가 도입 당시 검토 된 평가 소요기간 및 비용 등이 실제 평가와의 상당한 차이로 인하여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려는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임.

한편, 석재·골재는 건설공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주요자재로서 석재·골재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장폐기물인 무기성오니의 처리 문제가 중요하며, 무기성오니는 중금속 등 환경에 대한 위해성이 낮음.

더불어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이내, 토양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지하수·지표수에 대한 유해물질 분석 및 주변 환경오염에 대한 적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있는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염에 대하여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순환을 활성화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하려는 자에 대한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신설함(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신설).

Ⅲ. 검토의견

1. 무기성 오니를 석산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대상 기준 신설

개정안은 ① 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폐기물의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12만톤 이상으로 정하고, ②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에도 그 기준을 12만톤 이상으로 명시하며,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 또는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등을 석산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의 대상 규모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 ----- ----- ----- ----- ----- ----- -----

현행	개정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u>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2. (생략) ② ~ ⑦ (생략)	----- ----- -----. 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 ----- ----- ----- ----- ----- ----- <u>가.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이상</u> <u>나.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이상</u> <u>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량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인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하려는 경우</u> 2.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행법 제13조의2제1항1)에 따라 누구든지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으나, 재활용 과정에서 비산먼지·악취 등 생활환경 위해 방지, 침출수·중금속 유출에 따른 토양·수생태계·지하수 오염 방지, 소음·진동 예방 등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을 충족해야 함.

현행법 제13조의3제1항2)에 따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또는 ②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관으로부터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아야 함.

1)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浸出水)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2)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① 제1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재활용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하여 해로운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하는 방안 및 재활용기술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이하 “재활용환경성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폐기물의 종류, 재활용 유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둘 이상이 공동으로 재활용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의 원칙 및 준수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016년 7월 도입·시행되었으며, 평가 대상은 토양·지하수 등과 접촉하는 매체접촉형과 새로운 물질·용도·방법을 평가하는 비매체접촉형으로 구분³⁾됨.

이 중 매체접촉형의 대상 규모는 현행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제1항⁴⁾에 따라 ① 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폐기물 12만톤 이상,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 12만톤 이상, 또는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재활용환경성평가 제도 시행 이후 2025년 12월 기준 승인 현황은 총 51건으로 이 중 비매체접촉형이 49건, 매체접촉형이 2건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적합한 평가 수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총 6개의 전문 평가기관⁵⁾이 지정·운영 중임.

3) - 매체접촉형: 폐기물 또는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을 토양·지하수·지표수 등에 접촉시켜 복토재·성토재·도로기층재 등의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
- 비매체접촉형: 새로운 물질 또는 새로운 용도·방법의 재활용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① 법 제13조의3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폐기물의 경우(토양 등과 혼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2만톤
2. 폐기물을 토양 등과 혼합하여 만든 물질의 경우: 12만톤
3. 재활용 대상 부지 면적의 경우: 3만제곱미터

5)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재)환경보건기술연구원, 주식회사 지엔피,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

【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 현황 】

(단위: 건)

구분	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계	51	2	1	1	4	5	2	27	4	5
매체	2	-	-	-	1	-	-	1	-	-
비매체	49	2	1	1	3	5	2	26	4	5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한편,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제30조⁶⁾에 따라 ① 국유림이 아닌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면적 규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②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⁷⁾에 따라 ① 토석채취 등을 행한 산지는 원칙적으로

6)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
2. 토석채취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제30조(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①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7) 「산지관리법」

제39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①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한 산지를 복구할 때에는 토석(「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유해성기준과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다)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수목의 생육에 적합하도록 흙으로 덮어야 한다.

복구하여야 하고, ② 복구 시에는 폐기물이 포함되지 아니한 토석으로 성토한 후 표면을 덮어야 하나,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유해성 기준 및 재활용 용도·방법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임야지역 오염기준에 적합하여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등의 채움재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같은 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음.

현행법 시행규칙⁸⁾에 따라 채석지역 채움재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은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⁹⁾, 폐석분토사¹⁰⁾, 폐석재¹¹⁾이며, 2025년 기준 약 190만톤이 발생하였음.

이 중에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가 채석지역 채움재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 전체 발생량의 94%(약 179만톤)를 차지하며, 발생량의 약 92%(약 170만톤)가 성토·복토재로 재활용되는 것으로 추정됨.

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3] 폐기물의 재활용 기준

1) R-7 유형의 재활용 기준

라) R-7-4 유형의 재활용 기준

(1)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다음과 같다.

(가) 석산에서 채석 시 또는 골재[「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따른 골재선별·과쇄업자가 생산하는 골재(바다골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및 폐석분토사

(나) 석재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

(다)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를 재활용한 골재

(라)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가) 또는 (나)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폐석재 및 폐석분토사와 비슷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재활용 기준 및 절차·방법을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

(2) (1)에 따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수분함량 30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하여야 한다.

9)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51-02-06): 건축·토목용 돌, 콘크리트·모르타르 제조용 석재, 자갈, 모래 등의 가공·세척 폐수를 처리한 후 발생한 오니로써 수분함량이 95%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유기물함량이 40% 미만인 것

10) 폐석분토사(51-14-01): 산지 등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의 채석·가공 과정에서 토사와 섞여 발생하는 것

11) 폐석재(51-14-02): 채석·가공 과정에서 토사와 섞이지 않은 깨진 석재, 자투리 돌 등

【 채석지역 채움재로 사용 가능한 폐기물 재활용 현황 】

(단위: 톤)

구분	계	성토·복토	골재	시멘트	기타 제품	매립
계	1,901,625	1,742,298	99,291	49,828	2,389	7,820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1,788,820	1,702,198	33,095	49,828	1,625	2,074
폐석분토사	4,770	383	—	—	—	4,388
폐석재	108,034	39,717	66,195	—	764	1,358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와 같이 무기성 오니인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의 대다수가 이미 성토·복토재로 안전하게 순환 이용되고 있고 현행 법정 기준에 따라 유해물질 기준 충족 여부를 상시 검증받으며 지하수·지표수 분석을 통해 주변 오염 적정성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석산 복구 사업의 경우 현행법령상의 절대 기준(12만톤 또는 3만제곱미터 이상)을 초과함에 따라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매체접촉형으로 승인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하고 이 중 석산 복구용으로 승인받은 사례가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위해성이 낮고 현장 활용도가 높은 물질에 한해 「산지관리법」상 허가·신고량의 ‘30퍼센트 이상’이라는 상대적 용량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석재·골재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의 적정 처리를 도모하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안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에 대한 공식적인 안전성 검증이 부재¹²⁾한 상태이고,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사업장뿐만 아니라, 「골재채취법」, 「농지법」 등에 근거한 유사 업종 및 다른 폐기물 재활용 분야와의 제도적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¹³⁾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수용하기 어렵지만,

③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등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가공하여 한국산업표준(KS), 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을 받은 것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¹⁴⁾하거나,

12) 폐기물을 석산 복구를 위한 성토·복토재로 사용하는 경우 폐기물의 유해물질 기준 준수, 지하수·지표수 분석 등을 통해 주변환경 오염의 적정성 등을 관리 중이나, 다량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등을 석산 하부복구지·저지대에 재활용하려는 경우에 사면 안전성, 지하수·하천수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

13) 「농지법」 제36조에 따라 농지에서 골재를 채취한 후 폐기물로 복구하거나,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류 등을 토목·건축공사 등에 성토·복토 용도로 재활용하려는 경우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수 있으며, 정수처리오니·하수준설토·건설오니·선광공정광재·비금속광물제품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이나 오니류 등은 석산 복구재 용도로 사용 가능 폐기물과 환경적인 영향 등이 유사함에도 상대적 차이를 받을 수 있음

14)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거나, 환경표지인증,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순환골재 품질인증 등을 받은 재활용 골재를 토목·건축공사, 공유수면 매립지,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성토·복토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등을 이와 같은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 채움재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3(폐기물의 재활용 시 환경성평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를 제조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환경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5(재활용환경성평가의 대상) ③ 법 제13조의3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별표 4의2 제3호가목 또는 같은 호 나목1)의 재활용 유형에 따른 방법
2. 별표 4의2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영 제7조제1항제9호 단서에 따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지 아니한 폐기물매립시설은 제외한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별표 4의2 제4호가목 또는 나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성토재 등으로 사용하거나, 같은 표 제4호다목의 재활용 유형에 따라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로 사용하는 방법

④ 사후관리 내용을 고려하여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 및 승인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¹⁵⁾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한국골재협회는 ① 폐석분토사 등은 원석과 동일한 화학적 조성을 갖고 있으며 유해 유기성 독성물질과 병원성 균 등이 검출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체 석산의 하부 복구용으로 예외적 매립이 허용되고 있고, ②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 사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시스템(EIASS)에 공개하고 있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의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임.

한국폐기물협회는 석산 채움재의 폐기물 재활용 대상 및 기준에 관

-
- 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된 골재
 - 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골재
 -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재활용제품의 품목별 규격 및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것으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골재
 -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순환골재의 품질인증을 받은 골재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 4.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 등으로 재활용하는 유형(R-7)
 - 가. R-7-1: 인·허가 받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보조기층재·복토재·도로기층재·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나. R-7-2: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의 성토재 또는 뒷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다. R-7-3: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또는 바다와 인접한 폐기물매립시설의 복토재, 차수재로 사용하는 유형
 - 라. R-7-4: 석산의 채석지역 내 하부복구지·저지대의 채움재로 사용하는 유형
 - 마. R-7-5: 석유저장 옥외탱크, 지하매설관로 주변의 방식사로 사용하는 유형
 - 바. R-7-6: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하는 유형
- 15) 폐기물 등을 성토·복토 용도로 재활용하는 매체접촉형 재활용환경성평가의 경우 평가 시간·비용 대비 재활용 승인을 받지 못할 위험성 등의 사유로 규제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석산 개발 과정에서 폐기물을 복구재로 사용하여 사후관리 실적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자료를 활용하여 재활용환경성평가 절차·비용·시간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활용환경성평가 방법, 승인기준 및 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

해서는 충분한 과학적 검증과 연구용역 후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